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8
----------	-------

발의연월일 : 2024. 4. .

발 의 자 : 고병준 · 권영숙 · 남해석
신종갑 · 채우진 · 한선미
홍지광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 의무화(안 제3조)
- 나.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안 제7조)
-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1조)

3. 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제12조
- 2)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입법예고: 2024. 3. 27. ~ 4.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3호와”를 “제2호, 제3호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 중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로, “필요한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교육시설”이란 <u>제3호와</u>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p> <p>6. (생략)</p> <p>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u>강구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제2호, 제3호</u> <u>및</u> ----- -----.</p> <p>6.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 ----- ----- ----- <u>강구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u></p> <p><u>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u></p> <p><u>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u></p> <p><u>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u></p>

제4조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항

-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 제5조-----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p><u>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p><u>제6조 ~ 제9조의2</u> (생략)</p>	<p><u>제8조 ~ 제11조의2</u> (현행 제6조 부터 제9조의2까지와 같음)</p>
<p><u>제10조(지원)</u> 구청장은 <u>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제12조(지원)</u>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 재 정지원-----.</p>
<p><u>제11조</u> (생략)</p>	<p><u>제13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안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7조(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박준홍
연 락 처	02-3153-9642